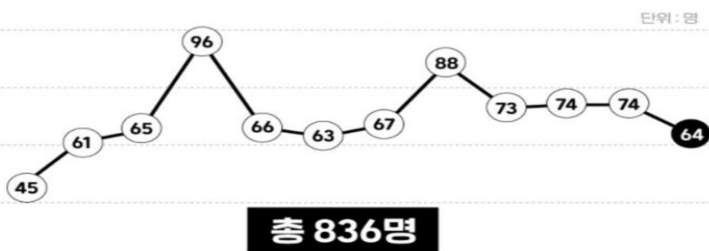


금속법률

**2020년에만 836명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제는 멈추어야 할 기업살인**

2020년 월별 산재 사망 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의 성과와 한계

작년 말, 정부와 국회는 민주노조 운동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전태일 3법 제정 요구를 무시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과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늘리는 등 노조법, 근기법 개악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1월 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작년 5월 133개 노동, 시민, 사회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발족하면서 본격화한 법 제정 투쟁은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입법발의와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운동과 여론의 압력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키면서도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대폭 반영하여 이 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원청 책임자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운동이 요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껍데기 중대재해법으로는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합니다(경향신문 사설).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에서 아예 제외시켰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을 3년이나 유예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이

발행)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전화 02-2670-9500 팩스 02-2679-1790



79.8%, 50인 미만이 98.8%이며, 2019년 산재 사망 노동자 중 5인 미만 사업장 사망 비율은 35.2%, 50인 미만 사업장은 그 비율이 무려 77.2%나 됩니다.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을 법밖에 둔 것입니다. 그 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시 징역형 하한을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대폭 낮췄고, 공무원의 처벌을 삭제하였으며,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발주처에 대한 처벌도 삭제하였습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법인 대표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 기업 대표가 아니라 안전 담당 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여지를 열어 두었으며,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 위험방지조치 의무의 구체적 내용, 중대재해에 포함되는 직업성 질병의 종류 등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법령 대응을 포함해 5인 미만 적용제외 등 온전한 취지의 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제정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집행되도록 감시하고 투쟁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중대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및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투쟁을 벌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금속법률은 현안쟁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주요내용과 쟁점,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사업장 활용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비고
<p>목적</p>	<p>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p>	
<p>중대 산업재해 정의</p>	<p>■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가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p>■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한 경우만 처벌</p> <p>■ 이 법에서는 부상과 질병도 일정 조건 하에 처벌대상에 포함</p>
<p>중대 시민재해 정의</p>	<p>■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가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10명 이상 	<p>■ 기존 시민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이 법에서 새로 도입</p>
<p>적용대상</p>	<p>■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수급인의 사업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 <p>■ 시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시민재해를 입은 시민도 포함 	<p>■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는 직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특고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나, 이 법은 제한 없이 모든 특고 노동자에게 포괄 적용</p> <p>■ 건설기계 등 장비임대차 계약이 '도급'에 포함되는지 해석문제가 존재</p>
<p>적용범위</p>	<p>■ 중대산업재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5인 미만의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처벌조항 미적용(제3조) <p>■ 중대시민재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 '공중이용시설'에서 소상공인(건설, 광업, 제조, 운송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소상공인에 준하는 비영리시설, 교육시설, 공동주택,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은 제외 • '공중교통수단'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도시철도, 철도 중 동력차, 객차, 항공기, 노선버스, 여객선이 해당. 시내버스는 제외 	<p>■ 원청 처벌, 정부의 사업주 등 지원(제16조)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p> <p>■ 산업안전보건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처벌하는 것은 가능, 양형문제.</p>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비고
<p>경영책임자 등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책임자 등 처벌 도입 ■ 안전담당이사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여지
<p>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산업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4조) • 재해예방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 등의 조치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조치 ■ 중대시민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또는 경영관리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공중 위험의 발생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위험의 발생으로부터 그 이용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제9조) ■ 도급, 용역, 위탁 등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원청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제4조, 제5조) • 원청이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경우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조치 의무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 ■ 원청에 직접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 ■ 발주자의 무리한 공기단축에 대한 처벌은 제외 ■ 동일 장소 아닌 사외 하청의 경우에도 원청이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경우 원청 책임 부담
<p>중대 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및 양벌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 사망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부상, 질병 : 7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형이 확정 후 5년 이내 위반시 각 항의 2분의1 가중 처벌(중대산업재해) • 법인처벌(양벌규정) : 사망 50억 이하, 부상, 질병 10억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역형 하한 도입 ■ 기존 시민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이 법에서 새로 도입
<p>징벌적 손해배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제15조) • 법인 또는 기관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비고
<p>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p>	<p>■ 정부가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 시행과 발생 원인 분석,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p> <p>■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 위험 시설의 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p>	
<p>심리절차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 위반 형사재판에서 법원 직권으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음 • 검사, 피고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함 	<p>■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제도 대신 전문가 참여로 변경됨</p>
<p>안전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산업재해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p>처벌사실 공표</p>	<p>노동부 장관이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발생일시와 장소, 재해 내용 및 발생원인 등 발생사실 공표</p>	
<p>시행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이상 사업장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미만 건설공사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지원, 보고 규정) : 공포한 날부터 시행 	<p>■ 2021. 1. 8. 국회 가결, 현재 (2021. 1. 19) 공포 전</p>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벌칙규정이 있지만 이는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처벌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의 개념 정의도 달라하고 있는 등 각 법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법정형, 안전, 보건 조치의무의 내용 등에서 상이합니다.

*** 활용방안**

기존에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근거로 고소, 고발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경우 동법상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근거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보건 확보 의무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 의무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각 현장의 안전, 보건의 확보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확인해서 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적용되는 주요 노동관계법령

최저임금법

최저시급 인상	지난 해 8,590원에서 8,720원으로 130원 인상. 주 40시간 기준 월급 최저임금액은 1,822,480원 (월209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21. 1. 1. 부터
---------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회사의 노조 운영비 원조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아님	20. 6. 9. 부터
"비종사근로 조합원" (해고자, 실업자 등 조합원) 권리와 활동 제한	1) 사업장에서 활동할 때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2)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활동 가능, 2)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 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자의 면제 한도계산 등을 위한 조합원 숫자 산정 시 제외. (단, 해고자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시 중노위 재심 판정시까지(종사)근로자로 봄, 종전 동일)	21. 7. 6. 부터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규정	1)'전임자' 표현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변경 2)노조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기준을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로 이관 3)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는 초과부분에 한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무효.	21. 7. 6. 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관련	복수노조와 개별 교섭 시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와 중립유지 의무 규정 분리된 교섭 단위 재통합 제도 신설 국가와 지자체의 초기업적 교섭 등 지원 의무 신설	21. 7. 6. 부터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기존 2년 한도에서 3년으로 연장	21. 7. 6. 부터

근로기준법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소멸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한 연차는 일괄 소멸	20. 3. 31. 부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적용범위	1년간 80% 미만 출근자와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도 사용촉진 제도 적용	20. 3. 31. 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도급인 연대책임	한 차례 도급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 미지급 시 도급인도 연대책임 발생	20. 3. 31. 부터
근로계약서의 전자문서 작성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함.	21. 1. 5. 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제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실시 (한 주간의 근로시간 상한을 52시간으로 하고, 이 '1주일'에 휴일이 포함됨을 명시. 단, 사업장에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되면 주당 52시간 초과 근무 가능)	21. 7. 1. 부터
30명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 인정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 상한제 시행되더라도 상한을 초과하여 1주 60시간까지 근로가능(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필요)	21. 7. 1. ~ 22. 12. 31.

2021년 적용되는 주요 노동관계법령

근로기준법 및 시행규칙

<p>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인가 사유 확대</p>	<p>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의 법정 연장근로시간 초과 허용 사유 확대 1)재난 내지 사고 수습 또는 예방 2)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 3)시설·설비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등 위 세가지 상황에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4)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5)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p>	<p>20. 3. 31. 부터</p>
<p>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p>	<p>30명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도 근기법상 법정유급휴일로 보장(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시행 중)</p>	<p>21. 1. 1. 부터</p>
<p>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확대</p>	<p>기존 단위 기간 최대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기간 신설로 최대 기간 확대</p>	<p>50명 이상 사업장 21. 4. 6. 부터</p>
<p>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p>	<p>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로 확대</p>	<p>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21. 7. 1. 부터</p>
<p>연장근로 인가 시 근로자 건강보호 의무</p>	<p>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시 건강검진 또는 휴식시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사용자 의무 부과</p>	<p>21. 4. 6. 부터</p>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p>퇴직연금 수급권 담보 제공 허용 사유 확대</p>	<p>재난(코로나 등)으로 입은 피해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p>	<p>20. 11. 3. 부터</p>
<p>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확대</p>	<p>재난(코로나 등)으로 입은 피해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p>	<p>20. 11. 3. 부터</p>

임금채권보장법

<p>출산전후휴가급여 채당금 대상으로 확대 / 수급계좌 보호</p>	<p>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도 채당금에 포함, 채당금 채권 뿐 아니라 이를 실지급 받은 예금에 대해서도 압류를 금지.</p>	<p>출산휴가 20. 12. 8. 부터 채당금보호 21. 6. 9. 부터</p>
--	---	--

2021년 적용되는 주요 노동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코로나 등 재난 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의 연간 최장 10일에 추가하여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자녀 소속 학교의 휴교나 자녀의 자가 격리 대상 지정 등 상황에서 연장 휴가 사용 가능.	20. 9. 8. (종전 규정에 따라 20. 1. 1. 가족돌봄휴가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적용)
육아휴직 분할사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하여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20. 12. 8.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휴직했 거나 휴직 중인 자도 적용)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스스로의 건강을 볼보기 위한 경우 등에 근로시간 단축(주 15~30시간) 가능, 기간 1년 원칙, 1년 연장 가능. (300명 이상 사업장은 기시행 중)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1. 1. 1. 부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현장실습생 안전·보호 주요규정 적용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해서는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의 조항을 적용.	20. 10. 1. 부터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21. 1. 1. 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화학물질 등을 제조, 수입하는 자는 안전보건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21. 1. 16. 부터
중대재해 확산 가능시 작업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제55조 제2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 9. 10. 부터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도급인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 시 도급인이 행해야 하는 작업환경측정의무(제125조 제2항)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 9. 10. 부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위험물질 규정량 변경 규정량 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심사 받을 의무 명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1. 1. 16.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21. 7. 16. 부터

2021년 적용되는 주요 노동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출퇴근재해 업무상 질병 적용 시점 변경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재해를 포함하도록 17. 10. 24. 개정된 제5조 및 제37조 규정은 16. 9. 29.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함	20. 6. 9. 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의 신청사유 제한	1)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제의 신청 가능	21. 7. 1. 부터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보장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	21. 7. 1. 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확대 적용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를 시행령으로 지정해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편입(아직 시행령은 미개정)	21. 7. 1. 부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 특례 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피보험자격 신고의무와 해당 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음	21. 7. 1. 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구직급여 실업급여	위 지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중에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계가 12개월 이상이고,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	21. 7. 1. 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출산 전후 급여	위 지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중,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지급	21. 7. 1. 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별신고기간 및 이전 보험료 한시 면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 시 신고일 이전 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시행일 이후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는 제외).	21. 1. 5. ~ 22. 12. 31

금속법률원(서울) 서울 중구 정동길5 경향신문사 별관 3층 I 전화 (02)2670-9500 I 팩스 (02)2679-1790
경남사무소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2호 I 전화 (055)262-3984 I 팩스 (055)262-3985
충남사무소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경제진흥원) 153호 I 전화 (041)910-1414 I 팩스 (041)910-1419
울산사무소 울산 북구 산업로 1020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 I 전화 (052)266-8001 I 팩스 (052) 257-3095